

의안번호	2209984
의 퇴 인	복기왕의원
회 답 일	2025. 7. 22.
추계번호	25B235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4조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제2항 신설	도로관리청은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공사 후 새로 설치되는 보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도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4조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제2항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도로공사 후 새로 설치되는 보도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 시설 설치(안 제54조제2항 신설)
 - 개정안에 따라 도로관리청¹⁾이 도로공사 후 새로 설치되는 보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도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도로공사에 따른 보도의 설치 계획, 신규 설치 보도에 대한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 시설 설치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개정안은 도로공사 후 새로 설치되는 보도 중 보행자 안전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보도와 해당 보도에 대한 보행자 안전 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이를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최근 3년간 일반국도²⁾에 대한 신규 보도 및 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도로의 종류 및 관리청

등급	정의	관리청
고속국도	자동차 교통망의 중추부분을 이루는 중요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이 이용하는 도로	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사장대행)
일반국도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국가 기간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국토교통부장관 (시 관내는 해당 시장)
특별·광역시도	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구역 내의 도로	특별·광역시장
지방도 (국가지원 지방도)	도내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며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건설하는 도로	도지사
시도	시 구역 내의 도로	시장
군도	군 구역 내의 도로	군수
구도	구 구역 내의 도로	구청장

자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발췌

- 2)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반국도 외에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등은 각각의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고 있어,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등에 설치된 신규 보도 및 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움

[표 1] 일반국도의 신규 보도 및 방호울타리 설치 현황

(단위: km)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신규 설치 보도	32.6	59.5	36.8
방호울타리 ¹⁾	17.21	9.98	25.67

주: 1) 해당 방호울타리의 길이는 신규 설치 보도 및 기 설치 보도에 설치된 방호울타리의 총 길이임
자료: 국토교통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